

농림축산식품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일부개정 알림

- 1. 관련 :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).
- 2.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, 출입기록부 기록 방법에 전자적 방법 추가,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절차 개선, 방역위생관리업자 및 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 주기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이 붙임과 같이 개정·시행('24.4.23.)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 - ※ 차량 운전자 등 보수교육 및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관련 개정사항은 '25.1.1일 시행
- 3. 이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, 협회·단체에서는 축산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홍보·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, 소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(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6호) 1부. 끝.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- 기주바의 과정되는 대학교에 -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전체과, 검역본부 내 가축방역 관련부서, 서도 방업부서,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, 농협 경제지주 축산방역부장, 농협경제지주 친환경컨설팅방역부장, (사)전국한우협회장, (사)한국낙농육우협 회장,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장, 대한양계협회장, (사)한국육계협회장,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장, 사 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장, (사)한국오리협회장, (사)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

주무관 서기관 **박경일** 방역정책과장 **이동식** 이동식

협조자

시행 방역정책과-2394 (2024. 4. 30.) 접수

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, (어진동) / http://www.mafra.go.kr

전화번호 044-201-2520 팩스번호 044-868-0628 / lmh5124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